

정보보안심사위원회규정

제정 : 2009.11.01
개정 : 2015.06.17
개정 : 2018.09.13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10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보보안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칭함)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정보보안정책 심의와 학내 정보보안의 총관장 <개정 2021.12.01.>
2. 정보보호정책 및 총괄 계획 심의
3. 정보보안사고 처리의 책임을 심의·결정 <개정 2021.12.01.>
4. 정보보안교육 및 정보보안 준수사항 감사
5. 기타 정보보안관련 제반업무의 총괄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전산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06.17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4조(위원장)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전략처장이 되며 정보보호담당관이 된다.<개정 2015.06.17., 2018.09.13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전산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유지한다. <개정 2015.06.17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정기적 회의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②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